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-25호

「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19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며, 자치분권 활성화 국정 기조에 발맞춰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더욱 부응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전원 공개모집
- 나. 당연직 위원 구성 (행정복지국장, 경제산업국장, 도시개발국장, 농업기술센터소장)
- 다. 연임 제한 규정 신설 (활동실적 저조한 경우 연임 제한)
- 라. 위원회 간사 변경 (예산업무 담당부서장 → 담당 팀장)
- 마. 교육 대상자 확대 (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시민 등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24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lunalena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